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19
----------	-----

2021. 1. 28.(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 1월 20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형근 경제통상국장)

가. 제안이유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에 따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 국내복귀기업 지원 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설(안 제21조)
- 타·시도 기업의 도내 이전,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강화(안 제22조~제23조)
- 서비스업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한도 확대(안 제24조)

- 지원 비율 특례 확대(안 제28조)
- 성장촉진지역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안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본 조례는 2004. 11. 26. 국내기업 및 외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돼 운영되어 오다, 2006. 12. 22.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전부개정 하였음
 - ※ 당초 '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06.12.22. 현행처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제명 변경
- 이후 지원 업종확대, 투자진흥기금의 유효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몇 차례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정부정책상 법령 및 지원기준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분리하여 국가 지원이 됨에 따라 우리도 투자유치 관련 조례도 분리 제정할 필요성 대두
- 이에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분리 제정하고,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괄
 - 제6장 제40조로 구성된 현행 조례를 제5장 제38조 개정함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u>제2조(정의)</u> ↳ 기존 제2조(정의) 내용 중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사항은 삭제, 도 실정에 맞도록 항목 및 내용 수정
제2장 투자유치 지원 등	제2장 투자유치 지원 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u>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u> ↳ 기존 강행 규정에서 선택적 규정으로 수정
제4조(위원회 구성 등) → 개정 제5조 제4조의2(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 개정 제6조 제5조(기능) → 개정 제4조	제4조(기능) <u>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u> ↳ 부위원장을 투자유치 업무 소관 국장으로 지정
제6조(회의) → 개정 제7조 제7조(의견 청취 등) → 개정 제8조 제8조(수당 등) → 개정 제9조 제9조(외국인 투자진흥관 설치) ▶ 삭제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등) → 개정 제10조, 11조	제6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회의) 제8조(의견 청취 등) 제9조(수당 등) <u>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u> ↳ 기존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등) 내용 중 전문가 활용 부분 분리
제11조(경비의 지원) → 개정 제11조	<u>제11조(자문단 운영)</u> ↳ 기존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등) 내용 중 자문단 운영에 해당하는 내용과 11조(경비의 지원) 통합
제12조(투자유치 지원) → 개정 제13조	제1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13조(투자유치 지원)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제13조(투자진흥기금) → 개정 제14조	<u>제14조(투자진흥기금)</u> ↳ 기존 제13조(투자진흥기금) 내용 중 기금조성 재원으로 '벤처임대단지 운영 수입금 및 매각대금' 추가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
제14조(기금의 용도) → 개정 제15조	<u>제15조(기금의 용도)</u> ↳ 기금 활용용도 추가 신설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벤처임대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 개정 제16조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현행	개정안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4장 투자기업지원
제18조(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 삭제 ↳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도 제정	제18조
제19조(지방세 감면) ▶ 삭제 ↳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도 제정	제19조(투자촉진지구 지정)
제20조(입자지원) ▶ 삭제 ↳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도 제정	제20조(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 신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개정 제26조	<u>제21조(국내복귀기업 지원)</u> ▶ 신설 ↳ 국내 복귀기업 지원 근거 마련
제22조(고용보조금 지원) → 개정 제27조	<u>제22조(타 시도 기업 이전)</u> ↳ 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상한 증액 (지원한도: 100억, 임차료: 9억)
제2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 지원) ▶ 삭제 ↳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도 제정	<u>제23조(도내 신·증설 투자)</u> ↳ 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상한 증액 (지원한도: 100억, 임차료: 9억)
제24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삭제 ↳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도 제정	<u>제24조(서비스업 지원)</u> ↳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 상한 증액 (지원한도: 50억, 임차료: 9억)
제5장 국내외기업 투자지원	
제25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 삭제 ↳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도 제정	제25조(공장운영비 등 지원)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u>제2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u> ↳ 기존 제21조 내용 중 지원기간 확대(6월→1년)
제27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 삭제 ↳ 개정 제20조	<u>제27조(고용보조금 지원)</u> ↳ 기존 제22조 내용 중 지원기간 확대(6월→1년) 및 기존 제31조 내용 포함

현행	개정안
제2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 개정 제22조	제28조(지원비율 특례) ▶ 신설 ↳ 기준에 따라 보조금 가산 근거 분리 및 6대 신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내용 추가
제29조(도내공장 신·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 개정 제23조	제29조(지원한도) ↳ 제조업(50억→100억)과 서비스업(20억→50억) 지원 한도액 확대
제29조의2(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 개정 제24조	
제30조(국내·외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 개정 제19조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30조의2(공장 운영비 등 지원) → 개정 제25조 제31조(국내기업의 지원 준용) ▶ 삭제 제31조의2(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 ▶ 삭제 제31조의3(임차료 지원) ▶ 삭제	제31조(절차)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 신설
제32조(지원한도 및 절차) → 개정 제29조, 제31조 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개정 제30조	
제6장 보칙	제5장 보칙
제34조(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제3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36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 삭제 제37조(지원 등의 취소 등)	제33조(도 시·군보조금의 분담 등) 제34조(사후관리)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 기존 강행 규정에서 선택규정으로 변경
제3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9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제40조(시행규칙)	제36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8조(투자유치 포상) 제38조(시행규칙)
부칙	부칙

-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업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투자유치 업무소관 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안 제14조제2항은 벤처임대단지 운영 수익금 및 매각대금을 투자진흥기금 재원으로 포함하되, 적립된 기금은 벤처임대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용도로 한정하도록 함
- 안 제14조제4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 사전 심의 절차 미 이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하여 현행 조례 대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까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 제15조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기금의 용도 외에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및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 안 제21조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2조, 제23조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안 제24조는 국내기업이 도내에서 서비스업을 하려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28조는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추가 지원비율의 범위에서 가산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 2% 범위에서 가산, **충북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위에서 가산토록 지원 **비율 특례를 확대**

*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신에너지, ICT융합, 유기농.식품, 신교통.항공

- 안 제30조는 상시고용인원 200명이상, 투자금액이 1,000억원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안 제35조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규정을 둠

다. 종합 검토의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려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지역 경기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량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등의 유치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임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의 투자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원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기업 투자 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주요 검토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 심의 절차 미 이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하여 현행 조례대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제4항 대한 수정의견 >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14조(투자진흥기금) ①~③ (생략)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 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자진흥기금)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 <u>2021년 12월 31일</u> --- ----- -----

○ 기업의 투자 유치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나, 각종 인센티브는 법령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도 중요한 만큼 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 사전 심의 절차 미 이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불가하여 현행 조례 대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12.31.까지로 함

나. 수정내용

- 안 제14조제4항의 “2025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수정함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14조(투자진흥기금)</p> <p>①~③ (생략)</p> <p>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4조(투자진흥기금)</p> <p>①~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u>2021년 12월 31일</u>----- ----- -----.</p>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포함)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부터 보조금 신청 시까지의 업력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이 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7.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8.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같은 법 제9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사람

1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2.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6대 신성장동력산업”이란 충청북도가 선정한 산업으로서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유기농, 정보통신기술 또는 항공정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 2(보육시설은 제외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15.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 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도내 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또는 균형건설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전문가와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투자유치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제14조(투자진흥기금)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
4. 벤처임대단지 운영 수익금 및 매각대금
5. 기금운용수익금
6. 차입금 및 그 밖의 잡수입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단,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제7호에 따른 용도로 한정한다.

1. 투자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2. 투자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3. 유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
4.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5.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6.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직장어린이집 등의 건립 또는 설치 사업
 - 나. 산업단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보수 사업
 - 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벤처임대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8.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투자 유치 관련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투자 유치 관련 과장
3. 기금출납원: 투자 유치 담당 사무관

② 기금의 집행은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4장 투자기업 지원

제19조(투자촉진지구 지정)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이 사업목적상 도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타 시·도 기업 이전) ① 도지사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이전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도내 신·증설 투자) ①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도내에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장 또는 연구소 신·증설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서비스업 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도내에서 서비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공장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공장 오·폐수 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
2. 해당 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제2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신규 채용으로 충청북도 도민을 20명 이상 상시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충청북도 도민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8조(지원비율 특례) 도지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기업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별표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비율의 범위에서 가산
2. 투자기업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인 경우: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3.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하는 주업종이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3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제29조(지원한도)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조업: 100억원
2. 서비스업: 50억원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 할 수 있다.

1.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성장촉진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 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2.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이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절차)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동일 목적으로 국가나 충청 북도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3조(도 시·군 보조금의 분담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이 부담하는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제34조(사후관리)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투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이행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을 사업이행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제36조(비밀 유지의 의무) 기업유치 업무 수행, 기업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투자유치 포상)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비율(제28조 관련)

신규 고용인원 수	추가 지원비율
15명 이상 20명 미만	1%
20명 이상 30명 미만	1.5%
30명 이상 40명 미만	2%
40명 이상 50명 미만	2.5%
50명 이상 60명 미만	3%
60명 이상 70명 미만	3.5%
70명 이상 80명 미만	4%
80명 이상 90명 미만	5%
90명 이상 100명 미만	5.5%
100명 이상 110명 미만	6%
110명 이상 120명 미만	6.5%
120명 이상 130명 미만	7%
130명 이상 140명 미만	7.5%
140명 이상 150명 미만	8%
150명 이상 160명 미만	8.5%
160명 이상 170명 미만	9%
170명 이상 180명 미만	9.5%
180명 이상	10%

* 타시도 이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투자: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 증설투자: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관련법령 발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할 것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개정·운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도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투자활성화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9조 (수당 등), 제10조 (민간전문가 활용)
- 안 제11조 (자문단운영), 제12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 안 제14조 (투자진흥기금)
- 안 제20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제21조 (국내복귀기업 지원)
- 안 제22조 (타 시·도 기업 이전) 안 제23조 (도내 신·증설 투자)
- 안 제24조 (서비스업 지원) 안 제25조 (공장운영비 등 지원)
- 안 제26조 (교육훈련비 지원), 안 제27조 (고용보조금 지원)
- 안 제30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안 제37조(투자유치 포상)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 요인

-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업 및 지원 조직 체계 구축
- 투자유치에 필요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예산 추계
- 국비지원 사업외의 도·시군비 매칭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 추계
-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원 추계

나. 추계의 전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 연 4회(분기별) 개최
-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개최
- 투자유치 유공 포상을 위한 비용 발생

다. 추계결과 :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연 50,000,000천원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지원사업 : 국비 45%~75%, 지방비 55%~25%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 도 · 시군사업 : 도비 30% 시군비 70%(청주, 충주, 진천, 음성, 증평)
 - *이외 지역(40%:60%), 1,000억원 투자협약시(공통) 50%:50%
-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수당 정책기획관 풀예산 사용

5.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도)	2차년도 (2022년도)	3차년도 (2023년도)	4차년도 (2024년도)	5차년도 (2025년도)	계	
세입							
세출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290,250,00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150,000,000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100,000,000	
투자유치 유공 포상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조달	60,050,000	60,050,000	60,050,000	60,050,000	50,050,000	290,250,000	
의존 재원	소계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105,000,000
	보조금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105,000,000
자체 수입	소계	11,650,000	11,650,000	11,650,000	11,650,000	11,650,000	58,250,000
	지방세	11,650,000	11,650,000	11,650,000	11,650,000	11,650,000	58,250,000
지방채	-	-	-	-	-	-	
기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40,000,000	
특별회계	-	-	-	-	-	-	
시·군비	17,400,000	17,400,000	17,400,000	17,400,000	17,400,000	87,000,000	
기타 (민간 자부담)	-	-	-	-	-	-	
	-	-	-	-	-	-	

6. 작성자 : 투자유치과 행정7급 박상준